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예천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2. 6.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22건	9	13	1	65,582	3	48,835	0	0
1	○ ○ ○ ○ 실	직렬조정 인사 운영 부적정		1						
2	○ ○ ○ ○ 과	⊙⊙⊙⊙⊙⊙⊙ 위탁 운영 부적정	1							
3	○ ○ ○ ○ 과	⊙⊙⊙⊙과 법인카드 대금 지출 부적정		1						
4	○ ○ ○ ○ 소	◇◇◇◇◇ 관리위탁 부적정	1							
5	○ ○ 과	2022년도 예천군 ⊙⊙시설 유지관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1						
6	○ ○ ○ ○ 과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 미이행	1		1	65,582				
7	○ ○ 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연장 처리 부적정		1						
8	○ ○ ○ ○ 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적정		1						
9	○ ○ ○ ○ 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확대 적용		1						
10	○ ○ ○ ○ 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조림 및 벌채 허가에 관한 사항	1							
11	○ ○ ○ ○ 실	농업회사법인 선정 지원조건 확인 업무 소홀		1						
12	○ ○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1						
13	○ ○ 읍면면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1						
14	○ ○ 면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1						
15	○ ○ ○ ○ 과과	건축신고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부적정		1						
16	○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						
17	○ ○ ○ ○ 과	◆◆면 ●● □□사업 추진 부적정	1				1	12,397		
18	○ ○ ○ ○ 소	예천 ●●●●●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1				1	10,318		
19	○ ○ ○ ○ 소	⊙⊙⊙⊙●●●장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등 추진 부적정	1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20	○○○○과	○○○○○○○○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 부적정		1						
21	○○○○과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1				1	26,120		
22	○○○○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렬조정 인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예천군 ○○○○○에서는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하여 승진대상 직급을 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 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 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시·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고,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하며,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는 예천군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에서는 2019. 7. 5.자 인사부터 2022. 1. 1.자 인사까지 6회에 걸쳐 결원에 따른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산정할 때에는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후 승진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 2019. 7. 5.자 인사부터 2022. 1. 1.자 인사까지 6차례의 정기인사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표 2]와 같이 직렬조정을 하였고, 그 중 17여 개 직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운전 등 특정 직렬의 승진적체와 적체된 직렬 직원의 사기제고를 이유로 복수직 정원이 없어 직렬조정이 불가능한 직렬임에도 직렬을 조정하여 [표 1]과 같이 6급 3명, 7급 10명, 8급 5명을 승진임용하였다.

[표 1]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현황

인사요인 발표일 (인사발령일)	조정 전 직렬	조정 후 승진된 직렬	비 고
2019. 7. 2. (2019. 7. 5.)	○○6급	○○○○6급 AB	조정 전·후 직렬간 복수직 정원 없음
	○○6급	○○6급 AC	
	○○○○7급	○○7급 (강임으로 감1)	
	○○7급	○○7급 AV	
	○○7급	○○7급 AG	
	○○8급	○○8급 AH	
	○○7급	○○○○7급 BD	
2019. 12. 27. (2020. 1. 1.)	○○7급	○○○○7급 BF	
	○○7급	○○7급 BT	
	○○7급	○○7급 DF	
	○○7급	○○○○7급 DN	
	○○8급	○○○○8급 DJ	
	○○8급	○○○○8급 DY	
	○○8급	○○○○8급 (○○○○8급 해임 취소로 감1)	
2020. 7. 1. (2020. 7. 6.)	○○○○6급	○○○○6급 SB	
	○○7급	○○○○7급 SG	

	○○7급	○○○○7급 SH	
	○○7급	○○○○7급 ST	
	○○8급	○○8급 SG	
2021. 12. 27. (2022. 1. 1.)	○○8급	○○8급 SZ	행정+운전 복수직 정원 1명인데 2명 직렬조정

[표 2]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직렬조정 현황

인사요인 발표일 (인사발령일)	조정 전 직렬	조정 후 승진된 직렬	비 고
2019. 7. 2. (2019. 7. 5.)	○○5급	○○5급 EB	
	○○5급	○○5급 EH	
	○○6급	○○○○6급 EG	
	○○6급	○○6급 EJ	
	○○6급	○○○○6급 EU	복수직 정원 없음
	○○6급	○○6급 ET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강임으로 감1)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RN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RJ	복수직 정원 없음
	○○○○8급	○○8급 RU	
	○○○○8급	○○8급 RY	
	○○8급	○○8급 RB	복수직 정원 없음, 방호8 정원 없음
	○○8급	○○8급 WC	
	○○7급	○○○○7급 WV	복수직 정원 없음
2019. 12. 27. (2020. 1. 1.)	○○5급	○○5급 WB	
	○○6급	○○○○6급 WN	
	○○6급	○○○○6급 WD	
	○○7급	○○○○7급 WF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WG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WH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TG	복수직 정원 없음
	○○8급	○○8급 TY	
	○○○○8급	○○8급 TU	
	○○8급	○○○○8급 TM	복수직 정원 없음
	○○8급	○○○○8급 TK	복수직 정원 없음
	○○8급	○○○○8급 (○○○○8급 해임 취소로 감1)	복수직 정원 없음
2020. 6. 23. (2020. 7. 1.)	○○5급	○○5급 TH	
	○○5급	○○○○5급 YH	
	○○5급	○○5급 YG	
2020. 7. 1.	○○6급	○○6급 YF	

(2020. 7. 6.)	○○6급	○○6급 YE	
	○○6급	○○6급 YA	
	○○○○6급	○○○○6급 YL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YO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IK	복수직 정원 없음
	○○7급	○○○○7급 IL	복수직 정원 없음
	○○8급	○○8급 IH	
	○○8급	○○8급 IG	
	○○8급	○○○○8급 IF	복수직 정원 없음
2020. 12. 28. (2021. 1. 1.)	○○5급	○○5급 IV	
	○○6급	○○6급 IC	
	○○6급	○○6급 IX	
	○○6급	○○7급 OP	
	○○8급	○○8급 OK	
	○○8급	○○8급 OJ	
2021 (2021. 4. 20.)	○○5급	○○5급 OG	
	○○5급	○○5급 OF	
2021. 6. 25. (2021. 7. 1.)	○○5급	○○5급 OD	
	○○6급	○○6급 OC	
	○○6급	○○○○6급 OW	
	○○6급	○○6급 MN	
	○○6급	○○6급 MB	
	세무7급	○○7급 MV	
	○○7급	○○7급 MX	
	○○7급	○○7급 MA	
	○○7급	○○7급 MS	
	○○7급	○○7급 MD	
	○○8급	○○8급 MF	
	○○8급	○○8급 MG	
	○○8급	○○8급 MH	
	○○8급	○○8급 MJ	
	○○8급	○○8급 MK	
	○○8급	○○8급 ML	

	○○8급	○○○○8급 SD	
	○○8급	○○8급 SF	
	○○8급	○○8급 SG	
2021. 12. 27. (2022. 1. 1.)	○○5급	○○5급 SH	
	○○5급	○○5급 SJ	
	○○6급	○○6급 SW	
	○○6급	○○6급 SE	
	○○6급	○○○○6급 SR	
	○○7급	○○7급 ST	
	○○7급	○○7급(교육복귀 감1)	
	○○7급	○○○○7급 SX	
	○○7급	○○○○7급 SC	
	○○7급	○○○○7급 SV	
	○○7급	○○○○7급 SB	
	○○○○8급	○○8급 SN	
	○○8급	○○8급 SM	
	○○8급	○○8급 GT	
	○○8급	○○8급 GR	
	○○8급	○○8급 GJ	
	○○8급	○○8급 GN	
	○○○○8급	○○8급 GM	
	○○8급	○○8급 GV	
	○○8급	○○○○8급 GC	
	○○8급	○○8급 GD	
	○○8급	○○8급 GF	행정+운전 복수직 정원 1명, 2명 직렬조정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 위탁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예천군의 공유재산인 ◇◇◇◇◇◇ ♠♠♠♠캠핑장에 대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거쳐 2020. 7. 3. 수탁자 HKS과 ○○○○○○○장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1. 캠핑장 이용료 관련 조례 미준수

「예천군 ◇◇◇◇◇◇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는 캠핑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캠핑장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이용시간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 일	
오토 캠핑		1면/1일	40,000	30,000	20,000	
모빌홈	일반 형	1면/1일	130,000	100,000	80,000	
	필로티 형	1면/1일	150,000	120,000	100,000	

*예천군 ◇◇◇◇◇◇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 [별표 2]에서 발췌

「♠♠♠♠♠♠ ○○○○○○○장 등」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0-***호, 2020. 6. 9.) 4. 위탁조건(입찰 유의사항) '라'항에서는 캠핑장 이용료 부과, 감면, 반환 등은 「예천군 ◇◇◇◇◇◇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2020. 7. 3. 체결한 '♠♠♠♠♠♠ ○○○○○○○장 등 위탁운영 협약서' 제17조(수탁 시설의 운영)에는 수탁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등은 「예천

군 ◇◇◇◇◇◇◇◇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용요금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위탁자와 협의하며 행정절차 완료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천군 ◇◇◇◇◇◇◇◇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제1항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군수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는 캠핑장 운영 수탁자의 캠핑장 운영·관리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제 ○○○○○○○○장 이용료가 예천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조례 및 협약 내용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예천군 ○○○○과와 협의하여 행정절차 완료 후 이용료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천군 ○○○○과에서는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은 ○○○○○○○○장 수지분석표에서 실제 이용료가 조례상의 이용료보다 1만원에서 2만원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캠핑장 유지관리 경비 부담 부적정

「♣♣♣♣♣♣ ○○○○○○○○장 등'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호.) 4. 위탁조건(입찰 유의사항) '가'항, 13. 기타사항 '사'항에 따르면 캠핑장 및 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물품(사무용품, 화장지, 세제 등)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개장 전 설치·구비하여야 하고, 제세공과금(부가세,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인터넷 요금 등) 및 소모품비(화장지, 세제, 이불, 식기도구 등)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장 등 위탁운영 협약서’(2020. 7. 3.) 제10조에서는 위탁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경비, 제세공과금, 소모품 구입비 및 위탁 재산에 대한 부과금 등 일체의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위탁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시설의 재산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협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과정에서 수탁자 HKS이 제출한 제안서 중 ‘3. 캠핑장 유지관리계획’에는 ‘펜션동 실내 집기류 및 비품을 제때 비치하여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 추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천군의 승인을 받고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2020. 7. 3. 협약 체결 이후 캠핑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보수, 내용연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선·보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탁자의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규모 수리 등이 아닌, 캠핑장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천군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표 2] 예천군이 부담한 캠핑장 유지관리 운영 경비 현황

지출일	적 요	지출액 (원)	비 고
합 계		1,675,500	
2020-12-24	◇◇◇◇◇◇ 캠핑장 건축용 씬팅 및 현수막 제작	830,000	
2020-08-03	○○○○○○○○장 펜션 예비 TV모니터 구입	400,000	
2020-07-24	○○○○○○○○장 편의동 샤워커튼 제작·설치	264,000	
2022-02-28	○○○○○○○○장 펜션 보일러 수리	181,500	

3. 캠핑장 위탁운영 관련 보험 증서 미징구

「예천군 ◇◇◇◇◇◇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서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수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장 등'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0-***호, 2020. 6. 9.) 4. 위탁조건 (입찰 유의사항) '다'항에서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바'항에서는 캠핑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재해복구 및 대인·대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수탁자 부담으로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협약(계약) 체결 후 수탁자로부터 낙찰금액 19,220,000원의 30%인 5,766,000원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받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받아야 했고,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증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20년 7월 협약(계약)당시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캠핑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별표]

○○○○ 캠프장 이용료 현황

(단위 : 원)

시기		2020년 7~8월 (성수기)		2020년 9~12월	
구분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오토 캠핑 (데크)	실제 이용료	40,000	40,000	40,000	30,000
	조례상 이용료	40,000	40,000	30,000	20,000
	차이	없음	없음	+10,000	+10,000
모빌홈 (펜션)	실제 이용료	120,000		100,000	80,000
	조례상 이용료	130,000(일반) 150,000(필로티)		100,000(일반) 120,000(필로티)	80,000(일반) 100,000(필로티)
	차이	-10,000(일반) -20,000(필로티)		-20,000(필로티)	-20,000(필로티)

시기		2021년 1~6월		2021년 7~8월 (성수기)	
구분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오토 캠핑 (데크)	실제 이용료	40,000	30,000	40,000	40,000
	조례상 이용료	30,000	20,000	40,000	40,000
	차이	+10,000	+10,000	없음	없음
모빌홈 (펜션)	실제 이용료	100,000	80,000	140,000	
	조례상 이용료	100,000(일반) 120,000(필로티)	80,000(일반) 100,000(필로티)	130,000(일반) 150,000(필로티)	
	차이	-20,000(필로티)	-20,000(필로티)	+10,000일반 -10,000필로티	

시기		2021년 9~12월		2022년 1~2월	
구분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오토 캠핑 (데크)	실제 이용료	40,000	30,000	40,000	30,000
	조례상 이용료	30,000	20,000	30,000	20,000
	차이	+10,000	+10,000	+10,000	+10,000
모빌홈 (펜션)	실제 이용료	120,000	100,000	120,000	100,000
	조례상 이용료	100,000(일반) 120,000(필로티)	80,000(일반) 100,000(필로티)	100,000(일반) 120,000(필로티)	80,000(일반) 100,000(필로티)
	차이	+20,000(일반)	+20,000(일반)	+20,000(필로티)	+20,000(필로티)

* '실제 이용료' 출처: ○○○○과에서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지 분석표'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캠핑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르고, 계약이행보증 보험 등의 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과 법인카드 대금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회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세출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소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품의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대금을 입금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면 전·후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 품의를 하고, 카

드 사용 후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대금청구서를 통해 지출 대상 건을 확인하여 카드 이용대금 결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야 했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전·후임 공무원이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인수인계하여 카드대금이 누락없이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2020. 6. 30.까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지 않았고, 2020. 1월에서 7월까지 7건, 총 941,800원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당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사전 품의조차 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미지급된 카드대금이 2021. 4. 23.에서야 지출되었고, 이 중 공용차량 세차비용 등은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지급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되는 등 회계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표] 2020년 ○○○○과 법인카드 사용 후 대금 미지급 건

사용일자	카드 사용액(원)	사용처	비 고
합 계	941,800		
2020. 01. 23.	76,300	AB	
2020. 06. 10.	198,000	CD	
	196,000	EF	
2020. 06. 19.	150,000	GH	
2020. 06. 22.	110,000	IJ	
2020. 07. 01.	210,000	LM	
	1,500	NO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관리위탁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예천군 □□□□□에서는 ○○○○○○○○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 시설현황

- 위치 : ◇◇읍 양궁장길 **
- 규모 : 부지면적 1,664㎡, 건축면적 402㎡
- 시설 : 사무실(구 양궁인의 숙소), 실내외 체험장, 창고 등
 - 실내 : 무빙타깃 체험존, 흡착활 체험, 교육장, 포토존, 매점 등
 - 실외 : 서바이벌장, 양궁·국궁·대형과녁 활쏘기 체험장, 호버볼 체험장 등

1. 관리위탁비 및 지원액 산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7765호, 2021. 1. 1.)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위탁을 할 때에는 입장 등 이용료,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을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0. 4월)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의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업무편람에 따르면 위탁료를 산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수입은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등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하고, 지출은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등을 기초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토대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 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민간위탁 기관 추진계획(안)을 수립¹⁾하면서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위탁료를 70백만 원²⁾으로 산출하였고,

2021. 5. 21. ‘♣♣♣♣♣’과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면서는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경비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예천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서는 위·수탁 계약서와는 다르게 관리위탁비³⁾를 교부하였다.

그 결과 수입과 지출에 근거하지 않고 관리위탁료가 산출되었고, 정확한 위탁료를 정하지 않은 위·수탁계약 체결로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위탁료가 지원⁴⁾되고 있다.

1) □□□□□-****(2021.3.25.)

2) 민간위탁 시 운영경비 137,00천원(인건비 90,000천원, 운영비 46,900천원)으로 산정하고 부족분은 수익금(수익금 전액 수탁자 귀속, ○○○○○ 운영비로 사용)으로 충당한다는 산출근거가 부족한 위탁료 산정

3) 2021.5.31. 41,000천 원, 2022.1.14. 70,000천 원

4) 2021년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서(해당 부분 발체, ♣♣♣♣♣(관리수탁자) 정산보고서 편집)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위탁금	자부담	계	위탁금	자부담	계	위탁금	자부담
132,530	41,000	91,530	114,590	41,000	73,597	17,933	0	17,933

- 위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 수익금이 위탁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수탁 관리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임을 방증하고 있음

2. 수탁자 선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7765호, 2021. 1. 1.)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입찰은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데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0. 4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료 산정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하여 최고가낙찰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활용하여 적격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활용하여 입찰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해당 지역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야만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수탁기관 모집 공고⁵⁾를 예천군 홈페이지

5) 예천군 공고 제2021-****호(2021.5.7.)

이지에만 공고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신청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공모에 참가한 신청자가 ‘(주)♣♣♣♣♣♣♣’ 1개 업체 뿐인데도 수탁기관으로 선정⁶⁾하였다.

[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예천군 공고문 중 해당부분 발췌)

가.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사무소와 전 직원(대표 포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단, 직원(대표 포함) 주소지의 경우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원(대표 포함) 이어야 함.(1명 이상)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양궁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 양궁선수 출신 또는 실업팀 소속 3년 이상 경력자(선수, 코치, 감독)
다. 위 가항과 나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그 결과 수탁기관 선정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사용료 부당 징수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6조,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를 운영하면서 운영 및 관리(사용료 징수

6)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5.13.) 수립 후 평가위원 서면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

포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⁷⁾에 따르면 이용료로 일반 7종(5천 원 ~ 3만 원), 패키지 7종(7천 원 ~ 3.7만 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 사용료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기준 없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토대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위탁료를 산정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시고,(주의)
- ② ○○○○○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7) □□□□□-1976(2021.3.25.)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22년도 예천군 ○○시설 유지관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2021. 11. 22. “2022년도 예천군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2020.11.30.)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 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같은 해 11. 29. 위 용역을 개찰하여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인 ‘○○○○○○○○ 주식회사’와 적격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 24. 위 용역 계약(344,097천 원)을 체결하였다.

위 부서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한 입찰공고서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 ②에 따르면 실적증명서는 건물(시설)관리용역 부분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예천군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함께 공고한 과업지시서 제5조 용역의 범위에 따르면 위 용역은 방제센터(통제실) 운영관리, 기계, 전기, 건축(조경), 소방, 조명, 방재, CCTV시설 등의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건물외부 공용시설(광장, 야외공원, 정원, 화단, 외부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환경(청소) 관리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과업지시서 제4장 시설관리에서도 건물의 승강기, 냉난방기, 급수시설, 전등 및 전열기 관리, 건물의 유지·보수 등 건물관리, 기계설비관리, 전기설비관리, 소방설비 관리로 위 용역의 과업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제5장 환경(수목, 청소) 관리에서 건물의 외곽 및 주차장을 청소하고, 수목을 관리하며 청소 후 발생한 오물, 폐기물 및 폐수 등 처리하는 것으로 과업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2020.11.30.)」 제1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행실적은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발주한 용역과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증명서의 용역 과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고, 동일한 용역인 경우에만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해 12. 3. ‘○○○○○○○○ 주식회사’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예천군으로 제출하였고, 위 업체가 제출한 용역이행 증명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주식회사 용역이행 증명서 내역

(단위 : 원)

용역명	발주처	계약기간	이행금액	용역개요
-----	-----	------	------	------

용역명	발주처	계약기간	이행금액	용역개요
●●●●용역	▣▣	2018.1.1.~ 2018.12.31.	43,948,310	●●●●용역
●●●●용역	※※	2017.4.1.~ 2019.2.28.	28,426,320	●●●●용역
●●●●용역	▣▣	2016.7.25.~ 2018.6.30.	15,140,240	●●●●용역
●●●●용역	△△	2016.6.15.8)~	134,587,570	●●●●용역
●●●●용역	●●	2016.5.1.~ 2020.1.31.	191,953,500	●●●●용역
●●●●용역	▣▣	2017.1.1.~ 2018.3.31.	8,860,570	●●●●용역
●●●●용역	▣▣	2016.4.19.~ 2017.4.18.	134,904,114	●●●●용역

그런데 감사기간 중 위 업체가 제출한 용역이행 증명서의 과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용역9)은 고객들의 주차 안내를 과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에는 건축물 등의 주차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용역10)은 주차장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수납을 과업으로 하고 있고 주차시설은 병원의 시설관리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위 두 용역은 건물(시설)관리를 과업으로 하는 “2022년도 예천군 ○○시설 유지관리 용역”과는 동일한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기간 중 위 내용을 기초로 ‘○○○○○○○○ 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시 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계약 이행능력 부적격 업체로 확인되었다.

[표2] 감사기간 중 실시한 ‘○○○○○○○○ 주식회사’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점)

8) 제출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는 해당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9) 2022.3.28.(월) 해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 ●● 와 통화하여 확인

10) 2022.3.28.(월) 해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 ○○과 통화하여 확인

구 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부적정 평가	정당 평가
합 계		100	95	92
이행실적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1	11	8.0 ¹¹⁾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15	15
신인도		+5~△5	0	0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4
입찰가격		70	65	65
결격사유	부도·파산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0	0

위 부서에서는 위 감사지적 내용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제출한 ‘●●●●●용역’과 ‘●●●●●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구분란에 시설관리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가 주차관제, 출입통제, 환경관리와 연계된 과업으로 판단되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적격심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위 두 용역의 도급계약서 제2조에는 용역 대상은 주차관리 및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는 주차관리원의 근무방법, 제13조에는 주차관리원 대기실 제공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과업의 내용이 주차관리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2020.11.30.)」 제2조에 따르면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천군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는 주차관리에 해당하는 과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부서에서는 과업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처에 문의를 통해 과업 내용을 확인하여야 했고,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것과 같이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했었다라면 위 과업이 건물(시설)관리와는 별개의 용역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11) 기초금액 대비 이행실적은 59.4%(231,279,554원*/389,340,000원)로 50% 이상~75% 미만 이행실적 배점
* 231,279,554원=43,948,310원(㉠㉠시)+28,426,320원(▷▷초)+15,140,240원(◁◁초)+8,860,570원(○◎)+134,904,114원(㉠㉠)

그 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에 미달(92.0점)하는 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감사기간 중 해당부서에 ‘♠♠♠♠♠♠♠♠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동일한 시설관리 용역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제출토록 요구한 결과 위 업체에서는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시 소재 ‘♣♣♣♣♣♣♣♣’와 시설관리 용역 897,643천 원을 수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보완·제출 하였다.

위 실적을 인정할 경우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행 실적은 당해용역 기초금액을 초과¹²⁾하게 되어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2) 기초금액 대비 이행실적은 100% 이상*에 해당되어 이행실적 만점에 해당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95점을 획득
* 1,128,921,944원(당초 인정액 231,279,554원+897,642,390원)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 미이행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읍읍읍읍읍과
내 용

예천군 읍읍읍읍읍과에서는 2018년, 2019년 (주)○○○○□□□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9월 ~ 10월 정산·확정하였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¹³⁾」 VI.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읍읍읍읍읍과에서는 2018년, 2019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 시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교부된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금 등에 대한 반환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 반환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천군 읍읍읍읍읍과에서는 (주)○○○○□□□에 2018. 6. 4. 60,000천

13)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2019.11.6.

원(보조금 50,000천 원), 2019. 5. 9. 1,380,000천 원(보조금 652,000천 원) 및 2019. 5. 23. 38,000천 원(보조금 30,000천 원)을 교부결정하고 2020. 9. 29., 2020. 10. 21. 두 번에 걸쳐 [표]와 같이 정산확정하면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초과금액 중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 요구하였으나, 보조사업에 따라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초과금액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주)○○○○□□□가 환급받은 공제 부가가치세 65,582천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보조사업 정산 현황

(단위 : 원)

사업년도	정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이자 등 반환금액	보조금 (반환 대상)	자부담
합 계	1,501,773,716	724,997,590	776,767,126	33,120	65,582,639	67,835,984
2018년	51,610,075	43,006,640	8,603,435	2,903	3,299,064	661,397
2019년	38,834,070	30,000,000	8,834,070	2,262	2,787,227	743,143
	1,411,329,571	651,990,950	759,329,621	27,955	59,496,348	66,431,444

※ 예천군 자료(주)○○○○□□□ 자료 포함)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주)○○○○□□□가 환급받은 공제 부가가치세 65,582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연장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농지에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통산하여 3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당초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예천군 ○○과에서는 육상골재 채취 야적장 용도로 예천군 가면 나리 외 ***필지의 농지 282,003㎡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아래 [표]와 같이 당초 허가 기간인 2013. 4. 30. 이후 3차에 걸쳐 연장한 사실이 있다

[표] ▣□ 골재 채취 야적장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현황

구 분	허가일	사용기간	허가면적(㎡)	근거법령
당초	2010. 4.30.	2013. 4.30.	282,003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1차변경	2013. 7. 1.	2016. 6.30.	282,003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2차변경	2016. 7.28.	2019. 6.30.	282,003	연장법령 미비
3차변경	2019. 7.17.	2020.12.31.	282,003	연장법령 미비
4차(복구공사)	2020. 7.13.	2021.12.15.	282,003	연방법령 미비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표]와 같이 2018. 7. 1. 부터 2024. 6. 30.까지 ◆◆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표] 예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현황

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위탁업체	차량대수	운영인력	이용시간
예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018.7.1.~ 2024.6.30. (2021.7.1. 재계약)	252백만 원 (’21년)	◆◆	6대(승합차)	7명 (전담관리자1, 운전자6)	평일 09~18시 운영

1. 민간위탁업체 재계약 부적정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예천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1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21. 7. 1. 위탁운영 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전에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와 예천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예천군 ○○○○과에서는 ‘◆◆’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¹⁴⁾하였음에도, 사전에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재계약시 종합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검토를 하여야하나 평가없이 재계약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다.

2.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10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차량을 연중운

14) 예천군 ○○○○과-***** (2021.3.30.)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 승인 통보"

영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 운영 협약서”에는 평일에만 운영토록 하여 도내 다른 시·군과는 달리 평일에만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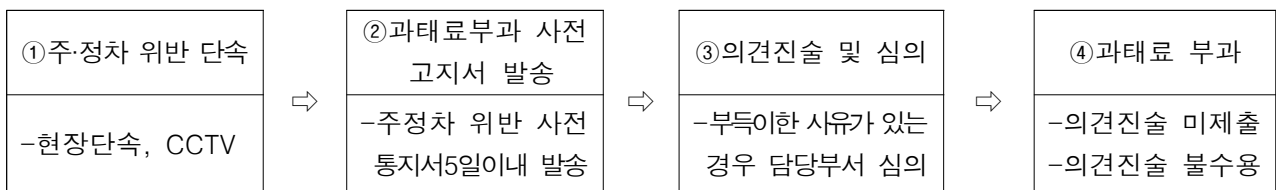
주 의 요 구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확대 적용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과 같은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천군 자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기준을 [그림]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그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 ‘장을 보기 위해 주차를 했다’라거나 ‘공무원 교육 참석’등의 이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서류

등을 규정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 사유, 관련 증빙의 타당성 등을 개별 검증하여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를 위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미운영시에는 각 일건 당 담당, 결재권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 면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따라서, 예천군 ○○○○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¹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서는 아니 되며,

면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며, 면제 사유, 관련 증빙의 타당성 등을 개별 검증하는 등 과태료 면제 처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예천군 ○○○○과는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견진술서 접수 118건 중 109건(92%)에 대해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하였는데, 이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5호에 따른 미부과 37건을 제외한 72건에서 ‘예천군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2019.2.)’의 면제처리 기준에 따른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52건이며, 나머지 20건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¹⁶⁾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였다.

[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에 따라 과태료 미부과 처리 현황

(단위 : 건)

15) ①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②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④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6) 예천군 ○○○과 관광해설사가 행사용 유니폼을 구입하는 의견진술을 하였는데도 행사지원으로 의견진술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예천군 주관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도 행사주관으로 미부과, 업무수행 중 주·정차 위반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업무수행에 더불어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공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면제가 가능

연도	의견진술 접수	의견진술 미수용	의견진술 수용			
			합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①~⑤에 따라 미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⑥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부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미부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미부과
2019	32	3	29	14	10	5
2020	50	3	47	16	22	9
2021	36	3	33	7	20	6
합계	118	9	109	37	52	20

※ ‘예천군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차량고장,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등

또한, 동일한 사유(단순물품 승하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의 타당성 및 객관적 증빙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면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를 미운영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검토서에 담당, 결재권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 면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의견진술검토서를 확인한 바 서명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과태료 면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조림 및 벌채 허가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조림에 관한 사항

예천군 ○○○○과(현 ○○○○과)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6232호)」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등)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어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¹⁷⁾되기 이전까지는 소나무류를 조림하지 않고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조림

17)「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일정한 기간(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은 1년, 잣나무림 지역은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산림소유자의 식재요청과 생육적지 등의 이유로 [표1]과 같이 2020년 반출금지구역내에서 국가 산림정책에 반하여 소나무류 17,100본(소나무 3,900본, 잣나무 13,200본), 5.7ha의 조림사업 4건을 추진하였다.

[표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조림사업 시행 내역

연 도	반출금지구역		조림사업						비 고
	지정일자	주소지	조 립 기 간	수 종 (묘 령)	본 수 (본)	면 적 (ha)	사업 구분	사업비 (천원)	
합계					17,100	5.7		38,190	
2020	17.09.14	가면 나리 산 **	4.8.~5.5.	잣나무 (2-2)	4,200	1.4	목재 생산	9,380	
	17.09.14	가면 다리 산**	4.8.~5.5.	잣나무 (2-2)	5,100	1.7	목재 생산	11,390	
	17.10.16	마면 바리 산**	4.8.~5.5.	잣나무 (2-2)	3,900	1.3	목재 생산	8,710	
	19.01.04	마면 사리 산**	4.8.~5.5.	소나무 (2-0)	3,900	1.3	목재 생산	8,710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벌채 허가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예천군 ○○○○과(현 ○○○○과)에서는 산림 내 입목의 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에 관한 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벌채할 경우에는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훈증·파쇄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VII-1-나항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피해고사목등¹⁸⁾을 벌채할 경우에는 파쇄, 소각, 매몰 등의

18) “피해고사목등”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파쇄를 할 경우에는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의 규격으로 파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소나무를 벌채할 경우 파쇄,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파쇄할 경우 1.5cm 이하의 규격으로 파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표2]와 같이 ○○○○과에서 2021년도에 허가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임목벌채 허가지의 경우 재선충방제법에 따라 방제조치 하도록 조건부 승인 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벌채된 소나무류의 산물(2센티미터 이상) 일부가 임지에 방치되어 있으며, 수집된 소나무류의 파쇄작업 또한 산물을 1.5센티미터 이하의 규격으로 잘게 파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걱정한 조치가 없었으며, 그 결과 매개충인 소나무재선충의 산란처가 되고 있다.

[표2] 2021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벌채 허가지

임야소재지				허가내역					
읍면	리	지번	지적 (㎡)	구분	면적 (ha)	수종	수량 (㎡)	허가기간	비고
가	나	산**	11,901	모두베기	0.62	소나무 상수리 기타활엽수	41 23 10	2021.02.09. ~ 2021.03.31.	반출금지구역 지정일자 2010.4.2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벌채 허가지의 임지에 방치된 산물(소나무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회사법인 선정 지원조건 확인 업무 소홀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예천군 ○○○○실에서는 2021. 10. 1. 농업회사법인 (주)♡♡(대표 CJ)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예천군 ◇◇◇♣♣♣ 추진단’¹⁹⁾의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진단을 통해 (주)♡♡에게 보조금 80,000천 원을(자부담 20,000천 원) 2021. 12. 17. 지급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농식품사업기본규정”이라 한다)제34조 제5항, 제35조 제7항, 제9항에 따르면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식품사업기본규정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9)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활동 조직을 발굴하고, 참여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등 예천군의 ◇◇◇♣♣♣사업을 총괄(예산집행의 주체)

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3.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4.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6.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7.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따라서 예천군 ○○○○실에서는 2021년 ◇◇◇♣♣♣ 생산가공시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 10. 1. 예천군 ◇◇◇♣♣♣ 추진단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에 지급되는 보조금 신청에 따라 2021. 12. 17.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업회사법인 (주)♡♡의 지원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상 총 출자금 30,000천 원이고 다른 출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농업법인 총 출자금 1억 원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주)♡♡를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80,000천 원을 예천군 ◇◇◇♣♣♣ 추진단을 통해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농업회사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내역

사 업 명	사업자 (대표)	사업비(천원)					지원조건 충족 여부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출자금 (백만원)	출자 지분	운영실적 (설립일자)	
2021◇◇◇♣♣♣ 생산가공시설 고도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J)	100,000	56,000	-	24,000	20,000	부(30)	여	여('19.6.24.)	균특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외²⁰⁾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²¹⁾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²²⁾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20) 농림지역·관리지역(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적용(「농지법」 제37조 제1항, 「2020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농지의 전용)

21)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분류에 의한 시설을 말함

22) ①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이라 함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의 기간을 말하며, 농지 전용허가일 경우는 전용목적 사업 완료일, 변경허가일 경우에는 변경허가 목적 완료일,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농지가 전용된 면적을 합산함

② '연접'이라 함은 하나의 시설부지와 다른 또 하나의 시설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함 「2020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농지의 전용

로 간주하여 허가제한면적을 적용²³⁾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고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2인이상이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제한면적 1,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BJ 외 1명(나면 다리 65 거주)이 나면 다리 65번지 2,771㎡ 중 1,722㎡에 각각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 # 과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6. 2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진행하여 2020. 7. 7. 농지전용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표] 예천군 나면 다리 65 단독주택 부지 농지전용허가(협의) 내역

(단위: ㎡)

소재지	필지 면적	전용 면적	허가 목적	농지구분 (용도지역)	협의일자	허가일자	토지소유주 (사용승낙)	수허가자 (전용자)
나면 다리 65	2,771	933	단독 주택	진흥박 (생산관리)	‘20.6.23.	‘20.7.7.	BJ	DS
나면 다리 65	2,771	789	단독 주택	진흥박 (생산관리)	‘20.6.23.	‘20.7.7.	BJ	DA
소계	2,771	1,722	-	-	-	-	-	-

※ 자료출처 : 예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업진흥구역 밖 생산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제한면적 1,000㎡에서 722㎡를 초과한 총 1,722㎡의 농지를 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3) 「2020년 농지업무편람」 P.309 <참고 : 용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요약),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 시달(농지51311-10268(2000.09.07.)호) 공문 P.48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읍, ◆◆면, ◇◇면

내 용

◇◇읍 등 3개 읍·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 등 4개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내역

연번	소관 부서	발급일자	법인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면적(㎡)		
합계	3개 읍면		4개	13필지	25,869.7		
1	◇◇읍	2019-01-16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읍 가리 345	2,351.2	부동산임대업	2021. 9. 23. 매매
2	◆◆면	2020-04-0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면 나리 95	2,820	부동산임대업	부
3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77-9	263.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4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77-5	1,216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5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77-2	25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6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5-1	447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7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5	1,14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8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4-1	95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9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4	1,481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연번	소관 부서	발급일자	법인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면적(㎡)		
10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3-3	3,34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11	◆◆면	2020-07-17	농업회사법인 ☆☆	◆◆면 다리 253	7,059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2021. 11. 5. 삭제)	부
12	◇◇면	2021-10-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면 마리 134	2,071	부동산개발, 임대, 매매업	부
13	◇◇면	2021-10-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면 마리 133	2,466	부동산개발, 임대, 매매업	부

※ 자료출처 : 예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심사 및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²⁴⁾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 경우 농지취득 전 등기사항 변경 필요),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빈번한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여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24) ① 영농조합법인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농업회사법인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 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²⁵⁾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읍 등 3개 읍·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이라는 사업범위 외 목적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농지 13필지(25,869.7㎡)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5)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출 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면, ◆◆면, ■■면
 내 용

▲▲면 등 3개 읍·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CK 외 7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내역

연번	소관 부서	신청인		처리 일자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성명	주소							
합계	3개 읍면	8명			19필지		12,068.28			
1	▲▲면	CK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1-16	▲▲면 가리 79	답	854	1,443	443㎡ 초과	부
				2020-02-05	▲▲면 가리 77	답	589			
2	◆◆면	KS	경기도 성남시 **	2021-02-02	◆◆면 나리 350	전	169	2,123	1,123㎡ 초과	부
					◆◆면 나리 352-1	전	1,954			
3	◆◆면	LS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2-14	◆◆면 다리 70	전	218.33	1,029 .64	29.64㎡ 초과	부
					◆◆면 다리 71	전	285.66			
					◆◆면 다리 71-3	전	10.83			
4	◆◆면	PD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2-14	◆◆면 다리 70	전	218.33			
					◆◆면 다리 71	전	285.66			
					◆◆면 다리 71-3	전	10.83			

연번	소관 부서	신청인		처리 일자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성명	주소							
합계	3개 읍면	8명			19필지		12,068.28			
5	◆◆면	OS	서울특별시 **	2020-09-09	◆◆면 라리 79-1	전	589.66	1,038 .32	38.32㎡ 초과	부
					◆◆면 라리 98-1	답	448.66			
6	◆◆면	YS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9-09	◆◆면 라리 79-1	전	589.66	1,038 .32	38.32㎡ 초과	부
					◆◆면 라리 98-1	답	448.66			
7	◆◆면	DJ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9-30	◆◆면 마리 197	답	664	2,086	1,086㎡ 초과	부
				2020-04-24	◆◆면 마리 200	답	770			부
				2020-06-18	◆◆면 마리 200-2	답	652			'21. 12. 29. 매매 57,600천원 시세차익)
8	▣▣면	WB	서울특별시 **	2020-12-04	▣▣면 바리 528	전	1,865	3,310	2,310㎡ 초과	부
					▣▣면 바리 550	전	1,445			

※ 자료출처 : 예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지법」 제6조,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²⁶⁾ 면적이 1,000㎡ 미만일 때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확인 및 심사할 경우²⁷⁾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

26) 세대원의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 임

27)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출 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

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²⁸⁾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면 등 3개 읍·면에서는 소유 상한 면적보다 적게는 29.64㎡에서 많게는 2,310㎡를 초과하였는데도 농지 19필지(12,068.28㎡)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신청인 CK 1,443㎡, KS 2,123㎡, DJ 2,086㎡, WB 3,310㎡ 등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소유제한 면적의 최대 3배까지 부당하게 소유하게 되었으며, ◆◆면 마리 200-2번지는 2020. 6. 18. 매입 후 2021. 12. 29.매도하여 57,600천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28) 기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으로 확인 가능 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신고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 과, ○○○○○과
내 용

1.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예천군 # #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예천군 ◆◆면 본리 산 ㄱ번지에 (주) ○●개발과 BS의 건축신고 2건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1. 9. 3. 및 2021. 11. 12. 각각 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축신고 수리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용도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주)△△	예천군 ◆◆면 **	2021.6.18. (2021.9.3.)	소매점	4,520	480	
BP		2021.9.16. (2021.11.12.)	소매점	4,960	480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승인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승인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 # 과에서는 ◆◆면 **의 건축신고에 따른 ○○○○○과의 협의 회신 결과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 # 과에서는 2021. 9. 16. BS으로부터 예천군 ◆◆면 ** 상의 건축신고 신청을 받아, 같은 날 ○○○○○과 등 관련부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관련법 검토 등을 의뢰하였고,

○○○○○과에서 ‘협의요청 서류상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4,960㎡’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에 따라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 연접 지역에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을 2021. 11. 3. 회신하였으나,

과에서는 동일 지번에 ㉠㉡로 대지면적 4,52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신고가 수리된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하는 등 동일 필지의 개발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

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에 따라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없이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4,960㎡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회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2021. 11. 12. 건축신고 수리하였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적정

예천군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21. 9. 17. 예천군 ◆◆면 **번지 상에 건축주 BP의 소매점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관련법 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 2021. 11. 3. 협의 회신한 사실이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2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면 **번지의 건축신고에 따른 # # 과의 협의 요청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 # 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협의 내용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기간을 지체할 사유가 없으나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지 않고 2021. 9. 17. 접수일로부터 47일이 경과한 2021. 11. 3. 회신하면서 # # 과에서 회신 요구한 2021. 10. 29.이 지났으나 지연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협의 의견 회신을 지연 처리하였다.

또한 # # 과에서 동일 지번에 ㉠로 대지면적 4,52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신고가 수리된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하여 동일 필지 개발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음에도,

동일 필지의 추가 승인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협의요청 서류상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4,960㎡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에 따라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 연접 지역에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회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 하도록 조건부 허가로 회신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1. 바닥면적 산정 부적정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 # 과에서는 ◎◎면 ♥♥리 **번지 외 1필지의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면적만을 제외하여 건축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 #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9. 11. 28. 건축주 JH로부터 예천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상의 다가구주택 60.1제곱미터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접수하였고, 증축 면적이 177.22제곱미터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 제외 대상이 아닌 출입구 폐쇄 및 내부 칸막이벽 설치의 사유로 바닥면적에서 117.12제곱미터를 제외한 60.1제곱미터로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으나, 바닥면적 재산정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건축주	용도	증축 연면적(㎡)		층수	비고
					현황	신청		
증축	예천군 ○○○면 ♡♡리 ** 외 1	2019.11.28. (2019.12.11.)	JH	다가구 주택	177.22	60.10	2	117.12㎡ 제외

2. 내화구조 검토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원장이 관련 고시에 따라 인정한 구조로 석고보드, 내화뿔철, 내화도료 등이 있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 # 과에서는 ◇◇면 ♣♣리 **번지 단독주택 증축허가 신청에 대해 내화구조가 아닐 경우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 # 과에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예천군 ◇◇면 ♣♣리 **번지에 건축주 KN이 신청한 단독주택 증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경량철골구조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없는 비내력 기둥으로 기둥 및 벽의 치수로 인정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21. 6. 9. 건축허가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표 2]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 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허가신청일 (허가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 수	비고
					기존	신청		
허가	예천군 ◇◇면 ♣♣리 **	2021.5.11. (2021.6.9.)	KN	단독주택	367.19	125.93	3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3.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수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면 ♣♣리 **번지 공장 증축 건축신고에 대해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표 3]과 같이 건축주 (주)☺☺이 예천군 ♡♡면 ♣♣리 **번지 외 55필지 상에 신청한 공장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에 대하여 연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한 30,619.79제곱미터이고 증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177.59제곱미터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2022. 1. 12. 건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공사감리자가 없이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하고, 건축허가에 비해 간소한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 건축신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비고
					기존	신청	
증축	예천군 ♡♡면 ♡♡리 ** 외 55	2021.12.27. (2022.1.12.)	(주)☺☺	공장	30,442.2	177.59	92.59㎡ 초과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 18. (주)□□ JH와 공사 계약을 하여 ‘◆◆면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면 ○○ □□사업	복지센터 1,256㎡, 광장, 주차장 조성 등	2021.1.26.~ 2022.7.18.	1,808	(주)□□	

1.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면 ○○ □□사업’의 공사가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면 ○○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가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나 해당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품질시험계획서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설

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면 ○○ □□사업’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품질시험 기구 비치, 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상의 품질시험실 면적이 18제곱미터로 부족하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면 ○○ □□사업’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공업체에서 2022. 3. 24. 감사일 현재 압축강도시험기, 양생수조 등의 품질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된 시험 항목 중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등의 다짐,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타일의 뒤틀림 및 흡수율 등의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등이 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

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면 ●●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강설 단가를 조사가격 중 최고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저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472천 원, 모르타르 바름 높이가 3.6미터 미만이나 3.6미터 초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업비 4,740천 원, 타일 압착 붙이기 일부를 점착 붙이기로 시공하여 사업비 3,889천 원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철강설 단가, 모르타르 높이 착오 적용 및 타일 시공방법 변경 등으로 공사비 12,39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실험실(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2,397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예천 ☐☐ ☐☐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예천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7. 6. ●●●●(주) JS과 공사계약을 하여 ‘예천 ☐☐ ☐☐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예천 ☐☐ ☐☐ 리모델링 공사	증축 759㎡ 및 리모델링	2021.7.8.~ 2022.5.3.	1,970	●●●●(주)	

1.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720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에서는 ‘예천 ▣▣ ▤▤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품질시험실 설치 여부 및 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상의 품질시험실 면적이 18제곱미터로 부족하고, 품질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예천 ▣▣ ▤▤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단열 보온재 등의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등이 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 ‘예천 ▣▣ ▣▣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강설 단가를 조사가격 중 최고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저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118천 원, 콘크리트 보수 보강 및 칼라 강판 설치를 표준품셈과 다르게 적용하여 사업비 7,631천 원, 실제 토사운반 거리가 4.15킬로미터이나 10킬로미터를 적용하여 사업비 644천 원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철강설 단가, 콘크리트 보수 보강과 칼라강판 설치 부적정 단가 적용 및 토사운반거리 미 정산 등으로 공사비 10,31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실험실(장비) 미설치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318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예천군 □□□□□에서는 2020. 11. 24. ㉠㉠ ■■■(주) 대표이사 JP과 공사 계약하여 ‘☉☉ ▲▲▲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관리사무소 설치 1식	21,850	21,850		2020.11.24. ~ 2020.12.14.	㉠㉠ ■■■ 건축(주) JP	
☉☉ ▲▲▲ 관리사무소 기초 설치공사	기초설치 1식	23,800	20,000	3,800	2020.10.7. ~ 2020.11.5.	■■■●●● 건설(주) LC	
☉☉ ▲▲▲ 미세먼지 안심공간 기초설치공사	기초설치 1식	17,050	17,050		2020.11.24. ~ 2020.12.14.	☉☉▶▶ 기계(주) QL	

1. 공사계약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 제1장 제1절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²⁹⁾ 2천만 원 초과의 전문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각 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주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전문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관련법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 ▲▲▲ 세부사업 1인 수의계약 현황
***정당한 계약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일	사 업 명	공사기간	추정가격	계약업체	현장 대리인
----	-----	-------	------	------	------	-----------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연번	계약일	사 업 명	공사기간	추정가격	계약업체	현장 대리인
				53,560		
1	2020.11.24	㉠㉠ ▲▲▲ 관리사무소 설치공사	2020.11.24. ~12.14.	19,870	㉠㉠ ■■■(주)	JP
2	2020.10.6.	㉠㉠ ▲▲▲ 관리사무소 기초설치공사	2020.10.7. ~11.5.	18,185	■■■●● 건설(주)	LC
3	2020.11.24	㉠㉠ ▲▲▲ 미세먼지 안심공간 기초설치공사	2020.11.24. ~12.14.	15,505	㉠㉠▶▶기계(주)	QL

한편, ‘㉠㉠ ▲▲▲ 관리사무소’는 건축물 1층 바닥 기초와 상부 건축물 등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구조별·공정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예천군 □□□□□에서는 ㉠㉠ ▲▲▲ 관리사무소 1층 바닥(2번 사업)과 상부 건축물(1번 사업)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이고, ‘미세먼지 안심공간 기초설치공사’(3번 사업)과 ‘관리사무소 기초설치공사’(2번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중 보강토옹벽블럭, 레미콘은 ‘3번 사업’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 하였으며, 사급자재 중 그리드는 ‘2번 사업’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여 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단일공사로 추진³⁰⁾하였음에도 2인 전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위의 [표 2]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3건의 공사로 분할 발주하여 2020. 10. 6., 11. 24. 2건으로 각각 1인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3건 공사의 준공서류에 일부 동일한 시공 사진이 서로 중복되어 첨부되어 있고, ‘1번 사업’의 준공서류에 ‘1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 등 ‘2번 사업’의 시공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위 3건 공사의 공사감독자도 ‘3번 사업’의 계약업체인 ‘㉠㉠▶▶기계(주)’의 현장대리인이 3건 공사현장 모두를 관리하여 실제로 ‘㉠㉠▶▶기계(주)’에서 위 3건의 공사 모두를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과 문답 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계약 체결은 3개 업체로 나누어 하였지만, 실제 공사는 ㉠㉠▶▶기계(주)에서 3건 공사 모

30) 공사 시행품의 시 3건 공사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업체명은 표시되지 않은 견적서가 첨부되어 발주 됨

두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공사감독자는 계약은 3개 업체로 나누어 하였고,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기계(주)’가 나머지 2건의 공사도 시공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표 1] ‘공사현황’과 [표 2]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기계(주)’는 ‘3번 사업’의 계약업체로 ‘2번 사업’이 2020. 11. 5. 준공된 이후인 같은 달 24일 계약한 다음 공사를 착공하여, ‘2번 사업’의 공사기간에는 ‘3번 사업’ 공사계약의 체결도 되지 않았으므로 ‘㉠㉠▶▶기계(주)’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이전이었음이 확인된다.

그 결과 분할발주로 하자구분이 곤란하게 되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부쳤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에게 입찰의 기회도 주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실제 공사계약 체결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에서 3건의 공사를 일괄로 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³¹⁾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3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호, 2020. 3. 31.)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예천군 □□□□□에서는 위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도면, 규격서 등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 없이 시행품의 시첨부된 견적서로만 공사를 추진하였고, ‘㉠㉠ ▲▲▲ 관리사무소 기초설치공사’는 뒷채움 골재(70m³) 미시공 사업비 2,721천 원, 유로폼 설치(49m²) 사업비 1,094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 ▲▲▲ 미세먼지덤퍼 기초공사’는 뒷채움 골재(70m³) 미시공 사업비 2,721천 원, 유로폼 설치(53m²) 사업비 1,183천 원 및 용접철망 설치(73m²) 사업비 679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³²⁾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는 뒷채움 골재 미시공 등 공사비 8,39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32) 과다 계상된 8,398천 원에 대한 시공사 회수 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위 처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29조(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하도급 제한 등)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예천군 ㉣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였다.

[표] ㉠ ㉡ ㉢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과업내용	계약금액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사	비고
㉠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47,000	2019.3.12.	2019.3.13. ~ 2019.5.11.	(주)㉦	
㉠ ㉡ ㉢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 평가 1식	18,600	2019.4.11.	2019.4.17. ~ 2019.12.27.	(주)㉧	
㉠ ㉡ ㉢ 조성사업 실시설계변경 용역	실시설계 1식	17,000	2020.5.20.	2020.5.20. ~ 2020.6.18.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2. 5’에 따르면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및 협의 요청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설명·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의 감독자 또는 준공검사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용역의 이행여부를 성실히 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천군 □□□□과에서는 2019. 3. 13.부터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2019. 4. 17.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진행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2019. 5. 11.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 협의가 2020. 5. 8.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2020. 6. 12. 제출되었는데도 2019. 12. 27.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준공처리 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 하여 추후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실시설계변경용역을 추가로 발주하는 등 용역비 17,000천 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2019. 12. 19. (주)□□●●건설 대표이사 RS와 계약하여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이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 진입로 확포장공사	L=949m B=8.5m	3,625	2,639	986	2019.12.24. ~ 2022.12.31.	(주)□□●● 건설 RS	35%

1.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별지 2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에 따르면 품질시험기구에 대해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9946호) 제15조의2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공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 2019. 12. 24. 착공계와 함께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품질시험기구 교정검사 미이행, 시험기구에 교정검사필증이 미부착, 품질관리자로 지정된 건설기술인이 2019. 4. 6.부터 다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기구 검교정 미실시로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 [] [] []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가 공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 [] [] []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반영된 임시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임시 침사지 미설치로 우기 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등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이 이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반영된 침투 집수정 2개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사업 착공(2019. 12. 24.), 중지(2021. 4. 22.) 통보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침투집수정 미설치로 인한 비점오염원 관리 소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4.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385호)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2019. 12. 24. 착공하여 2020. 10월부터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석 쌓기 58m 구간 에 대한 뒷채움 콘크리트 32m³, 부직포 222m², 영산홍 식재 475주 등 미시공 사업비 2,700천 원, 역T형옹벽 철근 수량(4.48ton) 산출 오류로 2,900천 원 과다 계상, 성토고 2m 이상 구간 동상 방지층(196m³) 반영 부적정 15,890천 원³³⁾, 1차분 공사 준공 후 보험료(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시 자기부담금 50% 미공제 7,030천 원, 1차분 공사에 반영된 품질시험비, 세륜기, 축중기 및 가설사 무실에 대하여 1차분 공사기간(16개월) 또는 실제로 사용된 기간(물량)으로 정산 하여야 하나 24개월로 정산하여 13,490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연석 쌓기 뒷채움 콘크리트 미시공, 철근 수량 산출 오류 등으로 공사비 42,01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3) 동상 방지층(196m³) 15,890천 원은 기시공 완료되어 감액동의서 미제출 됨

- ②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공사착공 및 중지 통보서 미제출, 임시 침사지 및 침투집수정 미설치 등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소홀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적합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예천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1.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42호) 제6장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³⁴⁾(이하 “건설정보시스템”이라

34)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한다)을 통해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가. 자본금 기준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 소명자료에 의심자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자본금 기준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를 통보³⁵⁾ 받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및 30일 평균잔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청 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기준 충족확인”으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³⁶⁾ 하였다.

35) 2019년 실태조사 통보 국토교통부 ◇◇♠♠과-6607(2019. 9. 30.)호, 2020년 실태조사 통보 국토교통부 ◇◇♠♠과-7971(2020. 10. 21.)호 관련

36)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20. 2. 19(2건), 2020. 3. 11.(1건), 2020. 3. 30.(1건), 2021. 3. 31.(1건) 예금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보완요청 없이 정상 처리 함

그 결과 2019년 실태조사 업체인 ‘○○○○(주)’, ‘△△△(주)’, ‘(주)△△△’, ‘○○○○(주)’, 2020년 실태조사 업체인 ‘(주)△△△’ 등 5개 업체는 실질자산임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소명되지 않는 자산을 차감한 후의 실질자본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나. 기술능력 기준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기술능력 적격여부의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술능력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를 통보³⁷⁾ 받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에서 제출한 기술자격증 사본의 표지와 경력사항의 성명이 상이하고, 학력만 기재되어 있는 등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2021. 3. 31. 정보시스템에 “등록기준 충족확인”으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37) 2019년 실태조사 통보 국토교통부 ◇◇♠♠과-6607(2019. 9. 30.)호 관련

그 결과 2019년 실태조사 업체인 ‘(주)ㅇㅇ’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기술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³⁸⁾ 실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또는 기간 만료 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5년, 사업자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제9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1호 사목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은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별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합)✱✱’에 대하여 2020. 10. 15. 건설산업정보

3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 ~ 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 등록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센터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1. 5. 20. 재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영업정지 처분 없이 2021. 6. 3. 사업자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하였다.

그 결과 ‘(합)❖❖’은 건설업 재등록 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³⁹⁾되었고, 2020. 10. 15.부터 2021. 6. 2.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 7] 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감경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 처분시 이전에 처분한 사실을 적용하여 감경 및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주)ㄸ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위 업체가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25천 원의 과태료를 부

39) 2020. 10. 15. 건설산업정보센터 통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되었다면 2021. 5. 20.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7개월 이상 실효된 상태로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등록말소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기간이 5년으로 제한 됨.

과하여야 하나, 처분이 없는 것으로 하여 75천 원을 부당하게 감정한 150천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였다.

4. 2개 이상의 등록기준 미달업체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법 83조 중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제1호 가목에 따르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판단에 있어서 처분의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개 이상의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2019. 5. 15. ‘(주)●●’에 대하여 등록기준 미달의 원인이 2건이라는 사유로 위반행위를 2건으로 판단하여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9. 8. 30. ‘(주)○○’은 ‘(주)●●’과 동일하게 등록기준 미달의 원인이 2건 인데도 1

건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체별로 영업정지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특정인에게만 현저하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위 “1항”부터 “4항”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설업 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전문건설업 관리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업 실태조사 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자본금, 기술능력)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